

대법원 2024도6088 강도살인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가상화폐를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살해 후 암매장 하였다는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약)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하였음(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08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해자들

- 피해자 A ⇒ 만 48세 여성, 피해자 B ⇒ 피해자 A의 배우자

▣ 피고인들¹⁾

- 피고인 1 ⇒ 법률사무소 사무장, 피고인 2 ⇒ 피고인 1의 대학 동창, 피고인 3 ⇒ 피고인 2의 지인, 피고인 4, 5 ⇒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 사실상 관계, 피고인 6 ⇒ 피고인 1의 배우자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나. 배경사실

- ▣ 피고인 4, 5와 피해자 A 사이에 가상화폐 투자 관련한 피해자 A의 투자계

1) 원심 공동피고인 이○○는 상고취하하여 징역 4년이 확정됨. 이하에서는 원심판결 기준 피고인 7을 피고인 6으로 표시함

약 의무 불이행을 두고 민·형사상 분쟁이 격화되었음

- ▣ 피고인 4, 5는 분쟁 과정에서 위 가상화폐 투자자였던 피고인 1을 알게 되었음

다. 공소사실의 요지

- ▣ 피고인 1~5의 강도살인[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강도치사를 예비적으로 추가]
 - 피고인 4, 5는 피해자 A와의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 1~3과 피해자 A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공모함
 - 피고인 1은 2022. 12.경 및 2023. 3. 9.경 피해자의 납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6을 통해 케타민 2병을 취득함
 - 피고인 2, 3은 2023. 3. 29. 23:45경 피해자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1회 주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뒤, 2023. 3. 30. 00:30경 용인시에서 피고인 1에게 피해자 A의 가방을 전달하고, 대전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함
 - 피고인 1, 4는 용인시 모텔에서 만나 피해자 A의 휴대전화, 피해자 A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아 접속하지 못함
 - 피고인 2는 2023. 3. 30. 04:28경 대전 야산에서 피해자 A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2회 주사하여 피해자를 케타민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함
- ▣ 피고인 1~3의 사체유기
 -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살해한 피해자 A를 암매장함
- ▣ 피고인 1~5의 강도예비
 - 피고인 1~5는 피해자 B를 납치하여 가상화폐를 빼앗기로 공모하여, 피

고인 1~3은 2022. 9.경부터 2023. 2.경까지 피해자 B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을 미행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강도예비 행위를 함

▣ 피고인 1~3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피고인 1은 피고인 6으로부터 수수한 케타민을 2022. 12.경 및 2023. 3. 10.경 피고인 2, 3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3회 투약하여 사용함

▣ 피고인 1, 4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 1, 4는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함

▣ 피고인 3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3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

▣ 피고인 6의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강도방조

- 피고인 6은 2022. 12.경 및 2023. 3. 9.경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케타민 앰플을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하여 강도를 방조함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피고인 1~5)

- 피고인 1~3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4, 5는 강도살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로, 범행 내용,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본안 부분

- 피고인 1 ⇒ 전부 유죄(무기징역)

- 피고인 2,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 무죄, 나머지 부분 유죄(피고인 2: 무기징역, 피고인 3: 징역 25년)
- 피고인 4, 5 ⇒ 강도살인 부분 이유 무죄, 나머지 유죄(피고인 4: 징역 8년, 피고인 5: 징역 6년)
- 피고인 6 ⇒ 전부 유죄(징역 5년)
-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
 - 부착명령청구 모두 기각
 - 피고인 1~3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5년), 피고인 4, 5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나. 원심

- ▣ 파기 부분
 - 피고인 3에 대한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 및 피고인 6 부분 파기
 - 피고인 3 ⇒ 징역 23년, 피고인 6 ⇒ 징역 4년 6월
- ▣ 항소기각 부분
 -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항소 모두 기각
 -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인 4, 5에 대한 강도치사 부분도 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
- ▣ 피고인들 및 검사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공모공동정범, 고의 인정 여부
- ▣ 피고인 4, 5에 대한 강도살인죄 또는 강도치사죄 인정 여부
- ▣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요건 해당 여부

- ▣ 원심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상고이유(피고인 2~5에 대하여)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치사죄의 예견가능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5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피고인 4, 5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 1의 상고이유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 2의 상고이유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 피고인 3의 상고이유

-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 4의 상고이유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강도죄의 공모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강도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피고인 5의 상고이유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강도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6의 상고이유

-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